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1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 등	3
2.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Ⅲ. 검토의견

1.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원에 대한 기여분 결정을 위한 심판 청구 요건에 상속 재산분할심판청구(제1013조제2항), 피인지자의 상속분 가액지급 청구(제1014조)가 있는 경우 외에 유류분반환청구(제1115조제1항)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1008조의2제4항),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내용임(안 제1118조).

현행	박지원의원안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생략)	第1008第의2(寄與分)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④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8第(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준용한다.

나. 현행 「민법」상 기여분 결정 청구 규정 및 유류분의 준용 규정

현행 「민법」 제1008조의2¹⁾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그 기여분을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다시 앞에서 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보도록 함(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바(제2항),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제1013조제2항) 또는 피인자의 상속분 가액지급 청구(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제4

1)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항), 현재는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거나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²⁾.

한편, 「민법」 제1118조³⁾에서는 유류분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1001조(대습상속)⁴⁾,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⁵⁾, 제1010조(대습상속분)⁶⁾의 규정을 유류분에 있어서 준용하고 있으나,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음.

다. 검토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규정한 규정이 없어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서로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2)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4)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5)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6)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⁷⁾,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⁸⁾.

이러한 현행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

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6)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08조의2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이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중간 생략...)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간 생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위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시 기여상속인이 기여분 결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기여
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에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는 기여분 결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 결정심판청구 요
건에 유류분반환청구(제1115조제1항)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기여상
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
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이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
(준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제1118조에 제1
008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
려고 하였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함에 비추어
제1118조(준용)를 개정하는 방안과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입법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즉, 개정안과 같이 제1008조(준용)에 제1008조의2(기여분) 규정을 준

9) 서울가정법원 2018. 7. 16.자 2017느합 77(심판), 대법원 1999. 8. 24.자 99스 28 결정 등 참조

용하도록 한 경우 현행법상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시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이 공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제1008조의2(기여분)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10)에 따르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여 생전증여되거나 유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안으로 제1008조의2 준용 규정 외에 제1008조의2제3항도 함께 정비하여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거나¹¹⁾,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개정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한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등¹²⁾의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

다음, 현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닌 민

10)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11) 이동진,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제1호(2019.3.) 참조.

12) 윤진수, “유류분과 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선입법의 방향”, 법률신문 2024년 8월 3일자 기사 참조.

13) 법원행정처도 유사 의견을 제시함.

사사건이고, 기여분 결정심판청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¹⁴⁾에 해당하여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인바, 소송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양 사건을 병합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14)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가사사건화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8198)」에서는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등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건을 동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판결과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8198)」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①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민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소송(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호의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

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

나. 「민법」 제839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당사자가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일 것

3. 제2호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이송결과와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취지를 반영하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이 공제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현행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할 수 있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을 해소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①개정안과 같이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는 것만으로는 현행 「민법」상 기여분이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한 부분을 한도로만 인정되고(제1008조의2제3항) 이미 생전증여되거나 유증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남아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는 기여상속인이 아닌 자(공동상속인 중 비기여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개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현행 기여분결정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거나, 기여분결정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